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0. 9. 1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8월 21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8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0. 8. 3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기획재정국장 정언택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대리인 선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판단 기준인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조항 신설(안 제6조)

- 선정 대리인 신청 및 통지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7조)
- 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사항에 대한 조항 신설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 - 「지방세기본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고, 지방자치단체의 선정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6조에서는 대리인 신청 요건으로 신청인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,
 - 안 제7조에서는 선정 대리인의 신청 절차와 요건이 충족할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통지해야 함을,
 - 안 제8조에서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.
- 검토결과
 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영세한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을 신청 받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세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48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0. 8. .
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세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대리인 선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소유재산의 평가방법, 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판단 기준인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조항 신설 (안 제6조)

나. 선정 대리인 신청 및 통지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7조)

다. 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사항에 대한 조항 신설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지방세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사항

1) 규제심사 결과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동의

3) 인권영향평가 결과: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: 개선할 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(2020. 7. 9. ~ 7. 29./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,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소유 재산의 평가방법)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「지방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.

제7조(선정 대리인 신청·통지 등) 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(이하 ‘선정 대리인’이라 한다)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

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.

-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·불복청구인·대리인 지정일자·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선정 대리인의 의무·우대 등)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.

-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-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변호사법」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「세무사법」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
2.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·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-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 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

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제6조(소유 재산의 평가방법) 영</u> <u>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</u> <u>소유 재산 평가는 「지방세법」</u> <u>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</u> <u>및 제4조에 따른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7조(선정 대리인 신청·통지 등)</u> <u>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</u> <u>2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</u> <u>포구 선정 대리인(이하 ‘선정 대</u> <u>리인’이라 한다)을 신청하려는</u> <u>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</u> <u>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</u> <u>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</u> <u>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</u> <u>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</u> <u>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</u> <u>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</u> <u>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</u> <u>야 한다.</u> <u>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서울</u> <u>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</u> <u>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</u>

현행	개정안
<신 설>	<u>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</u> <u>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.</u> <u>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·불복청구인·대리인 지정일자·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</u> <u>제8조(선정 대리인의 의무·우대 등)</u> <u>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</u> <u>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</u>

현행	개정안
<u>제6조 ~ 제8조</u> (생략)	<u>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 <u>1. 「변호사법」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「세무사법」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</u> <u>2.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·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 <u>3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</u> <u>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u> <u>제9조 ~ 제11조</u> (현행 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)